



축산 법령

축산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0호, 2019.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에 지장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가축·축산물 거래 시 각종 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산물 관련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 법률 제16550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